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야구장 내 핫도그 등 조리식품 이동판매 제안
- 규제합리화위원회·식약처,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허용,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 정부가 '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중독 예방 등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붙임 :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2396)
		담당자	사무관	박도연 (044-200-2397)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043-719-203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책임자	과 장	이 성 (043-719-2101)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3-719-2105)



✓ 본 가이드라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 영업자가 현행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현장의 이해를 돕고 혼선이 없도록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조(식품의 기준·규격), 제40조(건강진단),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1. 이동판매용 조리식품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조리·포장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마스크(플라스틱 마스크도 가능)를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준수

2. 개인 위생관리 (이동 판매자)

식품위생법 제3조, 제7조,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이동판매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 * 예) 청결한 복장 유지, 설사·복통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 등
-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판매
 -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과 같이 포장(비닐포장, 뚜껑있는 용기사용, 치킨박스 등)되어 제공하는 경우 건강진단 제외(예) 배달앱 종사자)

< 건강진단 관련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보건소, 병원 등에서 사전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의무(연 1회)

3. 이동 판매시 위생관리 (관람석)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 포장 시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식품용 표시 확인)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이동판매 시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 관리
 - * 물세척 외에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도 가능
- 이동 판매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 질의응답

Q1. 핫도그만 이동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핫도그 외에도 이동판매하는 시간동안 품질이 유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이동판매가 가능합니다.

- 예시로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의 보관온도를 유지(냉동제품은 냉동, 냉장제품은 냉장)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Q2. 김밥도 이동판매가 가능한가요?

A.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 측면에서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Q3.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시간 제한이 있나요?

A.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관람석에서 판매하지 못한 조리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팔아도 되나요?

A.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 및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5. 꼭 완전하게 포장해야 하나요?

A. 조리식품을 완전하게 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완전하게 포장(밀봉)하여 판매하거나, ②식품용 용기(일회용 종이/비닐포장 등)에 담아 판매하는 등 조리식품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 다만, ②완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이동판매 과정에서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므로 이동 판매자가 각별히 주의하고, 조리식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이동판매에 사용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A. 운반용 박스(상자)는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가능합니다.

Q7. 이동 판매자와 영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이동식품 판매자는 식품을 취급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하고,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조리식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식품 판매자가 개인위생 수칙 등 필요한 위생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